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초·중등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반영〉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9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30.
3. 회 부 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통해 그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초·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통하

여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 3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고,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등학교의 장에게 연 2회 이상의 금융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며,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초·중등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초·중등학교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학교금융교육의 실시)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현행	개정안
	<u>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u> <u>② 초·중등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금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u>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필요한 금융지식과 건전한 재무적 의사결정 능력을 학습하여 안정된 금융복지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고 있음¹⁾.

1) 제30조(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21년 금융교육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 교육과정²⁾(2022. 12., 교육부 고시)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선택과목³⁾으로 신설된바,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말 사회과 교사 및 학교 관계자, 금융교육 관련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홍보 및 선택 장려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 편성 현황>

교과 (군)	공통 과목	사회과 선택과목(19)		
		일반선택(4)	진로선택(9)	융합선택(6)
사회	한국사1 한국사2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사회, 경제 ,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신설> ,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 출처: 금융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교육 활성화 등 협력방안(2024년 제2차 금융교육
협의회 의결안건) 재구성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 2) 2026년도 기준 고2학생 수업부터 적용, 2025년 상반기 중 과목 선택 예정
3) 선택과목 중 교과 내, 교과 간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학생부(수시전형)에만 반영되는 절대평가 과목(정시전형은 미반영)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공통과목)의 금융 관련 주요 내용>

학교급 (교과)	금융교육 관련 단위	주요 내용
초등학교 (사회)	경제활동과 지역 간 교류	자원의 희소성,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 활동, 지역 간 교류, 상호의존 관계
	시장경제와 국가 간 거래	가계와 기업의 역할, 근로자의 권리,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경제 성장의 효과,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 무역의 의미, 무역의 이유
중학교 (사회)	경제생활과 선택	합리적 선택, 경제생활과 금융 생활,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 정신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	경제 성장과 국내 총생산, 물가 변동과 실업, 국제 거래와 환율
고등학교 (통합사회)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	시장경제와 합리적 선택, 경제 주체의 역할, 국제 분업과 무역, 금융 생활

※ 출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금융교육(백현지,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2023. 8.)

□ 이번 선택과목 신설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교과과정상 금융교육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초·중등학교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이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등에 금융교육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교육의 목적을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으로 한정하여 별도의 교육과정 반영 절차를 마련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금융교육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초·중학교의 경우 사회, 실과 등 관련 교과에서 금융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진로선택) 경제 / (융합선택) 금융과 경제생활(2026년도 신설)

- 특히 경제·금융교육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로 선정된바, 2026년부터 금융 관련 교육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금융을 포함한 경제교육 진흥 관련 개별 법령(경제교육지원법⁴⁾)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13개 시·도교육청이 금융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⁵⁾를 제정하여 3년마다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4)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과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금융교육 관련 내용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뤄지고 있는 점, 별도의 교육과정 반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학교 현장 운영상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둘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저촉될 우려가 있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의 결정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이고 교육감은 국가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⁶⁾. 따라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닌 교육감에게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국가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요청사항 반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①초·중등교육법 및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⁷⁾, ②△교육부의 개정 요청, △ 시도교

6)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

육감협의체의 개정 요청(과반수 동의), △일반 국민의 개정 요청(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⁸⁾가 마련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교육의 교육과정에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정안 반영 시 금융교육의 교육과정 반영 요청권까지만 명시하고, 요청에 따른 교육과정 반영 의무화

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국가교육위원회법」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셋째, 안 제30조의2제2항은 연 2회 이상 초·중등학교 금융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미 국가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반영되어 있는 점, 기존 교육과정 외에 추가적인 교육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은 학생, 지역,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이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회 이상 의무화하는 경우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대부분의 법정 의무교육 법령⁹⁾에서 교육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연 2회의 제한을 두는 것은 타 교과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 횟수는 단위학교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유동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학교 교육자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의무교육 횟수를 명시한 사례는 안전, 보건, 영양 교육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경우에 한정됨

<법정의무교육을 규정한 주요 법령 현황>

구분	법령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다문화 이해교육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8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
9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10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12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인성교육
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14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1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16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 마지막으로, 개정내용 중 초·중등학교 금융교육 실태조사(안 제30조의2 제3항) 및 경비 지원(안 제30조의2제4항) 조항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5,000만원, 2030년 2억 5,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억원으로 추계되며¹⁰⁾, 관계 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금융위원회**는 단위학교 대상 실태조사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교육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경비 지원은 단위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당국의 협조 및 교육청 지원예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단위학교 대상 실태조사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고, 이미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¹¹⁾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8

10) 유사사례인 교육부의 수학·융합 교육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비 소요를 참고한 추계 결과

11)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6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